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, 일반대학원장, 기획처장 및 연구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심사대상 교원의 소속 대학장은 당해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의안 심의에만 참석한다.

③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.

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⑥위원회의 의안 중 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,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평정
2. 교수자질, 교육 및 연구실적, 학생지도실적,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의 심사
3.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적용되는 심사기준 조정
4. 정년보장 교원의 정원 조정 건의
5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평점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

6-1-15~2 제6편 위원회

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소명 및 재심사) ①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발생한 경우에 교무처장은 이를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.

②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이 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재심요청을 한다.

③재심요청이 있을 경우에 총장은 위원 중 5인을 지명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이내에 재심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 및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보한다.

④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유지) 회의에 참석한 자는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, 날인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교무지원팀에서 담당한다.

제11조(세부규정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